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6.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10.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10.19.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10.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김 애 련

###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가정복지 증진” ⇒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 종사자”,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시설” ⇒ “기관” 또는 “어린이집”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설정(안 제5조제2항)

- 보육 전문가 ⇒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 ⇒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관계공무원 ⇒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3)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조례에 동일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 삭제(안 제10조제5항, 안 제5장)

4) 변경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나열된 내용에 따르도록 간단하게 수정(안 제6조, 제14조)

5)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면제대상 추가(안 제13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6)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안 제22조1항)

-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따라 2007. 1. 1.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이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만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신규 시설 설치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장)

8) 뜻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않는 용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은 쉽고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 등은 문맥에 맞추어 쉽고 명확하게 재설정

###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조례에 동일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안 제5장 등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 등의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이 2011년12월8일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구 관련 조례의 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음.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